

세무회계저널
제7권 제2호 2006년 6월 pp.165~184
한국세무학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개선방안

오기수*

<요 약>

본 연구는 고령화·저출산의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복지증진과 출산을 향상을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대책에 착수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간 총 19조원을 투자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선행연구와 사회구조 및 사회보장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관련 법규와 통계 등을 분석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을 비롯한 일본의 제도와 법률을 비교 검토하는 방법을 통한 고령화·저출산의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3분의 1이하로 매우 열악한 상태로 나타나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30위에 있지만, 근로자 1인당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의 38.6%인 것을 감안하면 사회복지의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고령화·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복지후생의 실현은 재원의 확보차원에서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에서 고령화·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완회시키는 대안으로 필수적인 실비용품과 유아용품등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노인생활과 출산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국의 경우에는 아동용 보호장구·의류·신발·모자 등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아동용카시트에 대해서는 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계의 육아비용을 줄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노인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에 관계된 지정노인방문간호, 居宅서비스, 시설서비스 등 용역과 이에 관계된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비과세를 하고 있다.

노인과 출산·양육에 필수적인 실비용품과 유아용품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문제는 세수 등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현재의 부족한 재정에 의한 직접적인 복지지출은 한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수의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면 복지후생지원과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실비용품과 출산 및 육아용품은 면세하는 세제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세, 사회복지, 복리후생

* 김포대학 세무회계정보과 부교수, okyes@kimpo.ac.kr, 011-289-8143

논문접수일 : 2006년 5월

게재확정일 : 2006년 6월

I. 서 론

1. 연구목적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대책에 착수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간 총 19조원을 투자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령화문제는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져야 한다는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30년을 내다보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정에서 아이 키울 걱정이 없이 평생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재원의 마련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매년 약 2조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고, 세수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복지정책이 그동안 미약하여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고령화·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복지후생의 실현에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령화·저출산의 문제에 간접적인 조세정책의 하나로 출산과 아동 및 노인에게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저출산의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복지증진과 출산을 향상을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관한 선행연구는 김유찬(1995), 유시권(1996), 최광·이우택(1998), 정재호(2002) 등이 있으며, 주된 내용은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측면보다는 세수확대와 과세공평 측면에서 면세범위의 축소 등 재조정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범위가 축소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유찬(1995)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세적용은 부가가치세의 기초를 유지할 뿐 아니라 세무행정상의 문제점과 경제활동의 왜곡을 줄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책적 필요나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부가가치세 면세와 영세율 적용을 허용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도입 당시와는 여건이 크게 달라진 시점에서는 부가가치세제도상의 면세범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재조정의 원칙으로서는, 납세주체에 따라서가 아니라 과세대상의 특성에 따라 면세를 적용하며,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자부담 증대를 피할 수 있도록 최종소비단계에 면세하고, 경제순환

에서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 · 경쟁관계에 있는 과세대상에 동등한 과세 적용이 이루어지며,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김유찬 1995, 83-85).

사회복지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고경환 등(2003), 김승권(2003), 박형수(2005) 등 많은 논문이 있지만 대부분 경우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나 후생복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을 말하고 있다.

박형수(2005)에 의하면 정부는 2004년 10월에 발표한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경제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투자기반을 확충하면서 재정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교육 · 복지 · 국방 · 지방재정 분야는 정부지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향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정부지출의 2004~2008년중 연평균 증가율은 6.3%인데 그 중 경제사업 지출은 2.9%, 일반행정 분야는 2.0%에 그치는 반면, 교육 분야는 7.9%,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분야는 9.5%, 국방 분야는 9.9%, 지방재정지원 분야는 8.3%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 대한 중요한 논거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구조가 선진국에 비해 경제사업 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복지예산의 비중은 매우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OECD 주요국과의 통계비교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재정지출 구조의 ‘경제사업 편중 및 복지예산 저조’ 현상은 쉽게 발견된다고 주장하였다(박형수 2005, 26-27).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선행연구와 사회구조 및 사회보장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관련 법규와 통계 등을 분석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을 비롯한 일본의 제도와 법률을 비교 검토하는 방법을 통한 고령화 · 저출산의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중심으로 하며 영세율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II.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세제지원의 필요성

1. 저출산 · 고령화사회기본법 재정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는 수명연장과 초저출산으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구성비율이 1960년 2.9%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9.1%로 높아졌고, 2050년에는 무려 37.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중위연령은 현재의 34.8세에서 2050년 56.2세로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4,99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4,235만 명으로 줄 것으로 추계된다¹⁾.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긴장과 혼란이 유발된다.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되고,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젊은 노동력이 부족해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경제성장 또한 저하된다.

1)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보도자료” 2005년 1월 19일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위하여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이 2005년 5월 제정되어 9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둘째,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모자보건의 증진 등,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셋째, 고령사회정책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취약계층노인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경제와 산업 등, 고령 친화적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따라서 올해는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계획 수립하는 원년이 될 것이며 그동안 산발적으로 수립된 정책들이 구체적이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질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표 1>은 2006년도의 노인복지예산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노후생활보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가정친화적인 소규모 다기능 노인시설 및 치매노인그룹홈 설치·운영 지원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및 노인건강관리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 노인복지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기초생활보장노인과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에 2,126억원이다. 노후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마련에 대한 예산은 159% 증가한 519억원이며, 노인그룹홈설치를 신설하여 155억원을 지원한다.

<표 1> 2006년도 노인복지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예산(A)	2006 예산(B)	증 감 (B-A)	%	주 요 내 역
노인시설기능 보강	82,469	75,716	△6,753	△8.2	
지방노인보호전문 기관운영	750	1,200	450	60.0	
노인일자리지원	20,048	51,973	31,925	159.2	노후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마련 및 박람회 개최

구 분	2005 예산(A)	2006 예산(B)	증 감 (B-A)	%	주 요 내 역
경로연금	212,647	215,318	2,671	1.3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 : 404천명, 4.5~5만원/인.월 저소득노인 : 221천명, 3.1~3.5만원/인.월
노인인력운영센터 지원	989	1,324	335	33.8	노후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노인인력운영센터 설립운영 및 노인인력 활용·지원
공적노인요양 보장도 시범사업	1,914	9,083	7,169	374.6	
노인그룹홈설치(신규)	—	15,500	15,500	순증	신축 155개소 - 지원단가 : 200백만원/개소

출처 : 200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 개요

<표 2> 2006년도 출산장려사업예산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장려사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분야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하고, 저소득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술 비용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예산은 너무나 부족하다. 고작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 38억원, 불임부부지원에 213억원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표 2> 2006년도 출산장려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예산(A)	2006 예산(B)	증 감 (B-A)	%	주 요 내 역
저출산대응인구 정책홍보	100	900	800	800.0	홍보매체별 콘텐츠 개발·실행 : 843백만원 홍보교육자료 개발·보급 : 57백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신규)	—	3,831	3,831	순증	지원대상 : 17천명 *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지원단가 : 300천원
불임부부지원 (신규)	—	21,300	21,300	순증	지원대상 : 15천명(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인 자) 지원방법 : 시험관아기시술비(3백만원)의 50% (수급자 85%)를 2회 지원 * 1인당 최대지원액 : 3백만원(수급자 510만원)

출처 : 200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 개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서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국가 복지제도의 발달정도나, 복지예산의 규모 등에 있어서 매우 빈약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통계연보(OECD Factbook 2005)에 나타난 한국은 경제부문에선 대체로 우수하나 '삶의 질' 면에선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2001년을 기준으로 하여 GDP대비 6.12%로 꼴찌를 차지하였으며, 건강지출액은 1인당 519달러로 27위에, 보건비지출은 1인당 996달러로 26위에 그쳤다. <표 3>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의 3분의 1이하로 매우 열악한 상태로 나타나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표 3> OECD평균과 우리나라의 주요 공공정책과 삶의 지표 비교

분야	지 표	단위	년도	우리나라		OECD 평균
					순위	
공 공 정 책	재정수지	% (GDP 대비)	03	4.15	2위	-3.68
	정부채무	% (GDP 대비)	03	18.7	2위	-
	사회복지지출	% (GDP 대비)	01	6.12	30위	21.20
	1인당 건강지출	\$	02	519	27위	-
	정부어업보조	억불	02	5.4	4위	-
	조세수입	% (GDP 대비)	01	27.2	29위	36.9
	근로자 1인당 세 부담	% (노동비용대비)	03	14.1	30위	36.5
삶 의 질	1인당 보건비지출	\$	02	996	26위	-
	- 공공지출	\$	02	519	28위	-

출처 : OECD Factbook 2005 ;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표 4>는 OECD기준의 사회복지비 분류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복지비 지출내역이다(백화중 외, 2003, p.124).

<표 4> OECD기준의 사회복지비 분류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복지비

OECD기준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지출내역
노령연금급여	국민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장애연금급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가보훈사업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산업재해 보상보험
결병급여	—

OECD기준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지출내역
노인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시설보호, 노인시설보호, 재가노인지원, 재가장애인보호, 재가장애인주간보호, 장애인민간단체지원, 재가노인주간보호, 재활원운영, 재활훈련, 재활병원 및 치료, 재가 노인지원, 재가장애인보호, 장애인교육관련제도
유족급여	국민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국가보훈사업,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가족현금급여	저소득지원, 국가보훈, 출산휴가
가족복지서비스	아동보호, 사회복지관운영, 아동건전육성, 아동시설지원, 모자보호/부녀직업보도시설, 가정복지, 재가부녀/모자가정지원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 한국장애인촉진공단, 공공근로사업,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실업급여	고용보험(실업급여), 국세청,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보건	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보험, 의료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주거급여	—
기타급여	재가노인지원, 생계보호, 교육보호, 아동건전육성, 자활보호, 재가장애인보호, 일시구호, 대해구호, 부랑인시설보호, 귀순복합동포

3. 외국의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가.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OECD는 사회복지지출을 “가계와 개인이 그들의 복지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나 재정적 지원으로, 특별한 재화와 용역의 직접지급이나 개별계약 또는 이전은 포함하지 않으며, 급여형태는 현금일수도 있고 재화나 서비스 같은 현물일 수도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지출의 항목에는 노인의 복지서비스와 아동관련 가족복지서비스의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표 5>에 따르면 2001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수준을 OECD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6.12%로 미국의 14.78%, 일본의 16.89%에 비하여 매우 낮은 상태이며, 특히 덴마크의 29.22%는 우리의 4.7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사회복지지출은 OECD회원국의 20~41%의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비교 국가로 선정한 영국의 사회복지지출은 GDP의 21.82%이며, 노르웨이는 23.90%로 나타나 사회복지에 정부의 재정지출과 함께 조세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OECD 주요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현황

(단위 : 자국의 GDP에 대한 %)

국가	1997	1998	1999	2000	2001
한국	4.24	5.94	6.91	5.61	6.12
덴마크	30.66	30.17	29.84	28.89	29.22
프랑스	29.42	28.96	28.91	28.34	28.45
독일	27.62	27.37	27.37	27.17	27.39
일본	13.78	14.50	15.14	16.13	16.89
노르웨이	24.11	25.70	25.77	23.00	23.90
영국	22.02	21.49	21.25	21.69	21.82
미국	14.91	14.49	14.24	14.24	14.78
OECD 평균	...	...	20.96	20.86	21.20

출처 : OECD Factbook 2005 ;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나. 외국의 저출산 대책 재정지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직접적 현금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이나 아동수당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제공하고 있지만, 그 정책대상이나 지원수준은 매우 다르다. 보편적 수당의 형태로 운영되거나 소득·자산조사에 근거하여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최근 OECD 일부 국가에서는 출산율의 하락에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현금지원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하여 개별 가정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영국 등의 저출산 대책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본다.

(1) 영국의 아동수당제도

1945년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를 해결하고 아동양육비의 경감, 다자녀 가구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수당법을 통해 첫째 아이를 제외한 16세 이하의 아동에게 주당 5실리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아동에게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966년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이 실시되었다.

아동수당 지급자격은 의무교육 종료 이전의 아동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한 자녀 이상을 가진 모든 가정에게 지급한다. 의무교육연령 상한 이하(현재 16세)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는 19세까지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편부모의 첫째 자녀에게는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지급액은 첫째 자녀에게는 주당 14.40파운드, 둘째 자녀부터는 주당 9.6파운드이다. 기타 맞벌이 가족의 세금 감면혜택의 일부로 부모들은 실제 아동보육비의 70%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자녀 1명당 70파운드(14만원), 2자녀 이상의 경우 150파운드(30만원) 정도이다(안명옥 2004, 34-55).

(2) 일본의 아동수당제도

일본 정부와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각종 출산 장려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출생 시점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 5,000엔, 셋째 아이부터는 월 1만엔의 아동 수당을 2006년 4월부터 지급기로 한 데 이어 산모 입원비를 포함한 출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출산무료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산모나 배우자가 가입한 건강보험 등 공적 의료보험에서 출산 때 지원하는 장려금을 현행 30만엔에서 올 10월부터 35만엔으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부터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린다. 현재는 아이 2명이 동시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만 둘째 아이의 유치원비를 40% 할인해 주고 있으나 큰 아이가 초등학교로 진학해도 둘째 아이의 학비를 10% 할인해 주기로 했다²⁾.

또한 일본 정부는 임신 6개월 미만인 임신부에게는 9,230엔(약 10만원), 임신 6개월 이상 임신부에게는 13,960엔(약 15만원), 산모에게는 8,580엔(약 9만원)의 출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3) 프랑스의 아동수당제도

프랑스의 아동수당의 지급자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는 16세 이하로써,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되며, 가족의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의 55% 미만일 경우에는 17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학생이나 집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지급된다. 지급액은 2자녀 가정은 매월 108유로, 3자녀 가정은 매월 248유로, 3자녀 이상부터는 추가 자녀수당 가산액인 140유로를 지급받게 된다. 10~16세 아동은 1인당 192프랑의 아동수당이 추가 지급되고, 17세이상의 아동은 아동 1인당 341프랑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된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한 가산액은 없다(안명옥 2004, 34-55).

출산 보너스로는 아이 1명당 800유로(104만원)씩을 받는다.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엄마에게는 3년 동안 매달 340유로(44만2,000원)를 사회 보장 기금에서 지원한다. 직장을 계속 다니기로 한 경우, 3년 동안 아이를 돌볼 탁아소 보모에 대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 받는다³⁾.

(4) 독일의 아동수당제도

독일은 일찍이 1954년도에 정기적인 아동수당의 지급으로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입법화하였다. 그 후 독일의 아동수당은 점차 지급액이 증액되었다. 현재 아동수당은 자녀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3번째 이하 자녀까지는 각각 매월 154유로, 4번째와 5번째 자녀에게는 매월 179유로가 지급된다.

다. 외국의 고령화 대책 재정지원

노인복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의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 대표지표에서는 정부지출 대비 노인복지지출을 살펴보다록 하였으나, 국제비교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GDP 대비 노인복지지출을 살펴보면 한

2) 한국일보, 2006년 2월 3일 “일본, 뱃속 아이에도 수당 준다… “출산 늘려라” 초비상”

3) 한국일보, 2005년 3월 18일 “저출산 · 고령화 선진국에서는”

국은 0.1%인 반면 일본은 0.27%, 영국은 0.5%, 스웨덴은 2.49%로 나타난다. 스웨덴의 노인복지지출은 타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는 이미 노령사회이거나 근접한 나라로서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이제 막 노령화사회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GDP대비 노인복지의 지출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표 6>은 GDP 대비 노인복지지출의 국제비교로 노인복지에서 포함하고 있는 항목이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시설보호, 재가노인지원, 재가노인주간보호, 노인교통비지원 등을 포함하고, 외국의 경우는 노인숙박시설,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일상생활보조, 기타 현물급여 등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국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정경희 외 2002, 228-229).

<표 6> GDP대비 노인복지지출의 국제비교(2001년)

구분	한국	일본	영국	스웨덴
GDP대비노인복지 지출	0.1	0.27	0.5	2.49

출처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1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지수, 2001

고경환(2004) 등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2001년 약 47조 9952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일본은 약 88조 3452억원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약 2배이다. 주요 지출항목의 배분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보건'이 17조 8,740억원으로 전체의 37.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실업'이 13조 8,380억원으로 2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노령'이 6조 7,192억원으로 14.0%이다. 따라서 이들 3개 부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80.1%)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노령'이 39조 6,833억원으로 전체의 44.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보건'이 31조 6,039억원으로 35.8%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은 이들 2개 부문이 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80.7%)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경환 외 2004, 108-109).

4.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제지원의 필요성

<표 7>은 보건복지부가 2004년 4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 “저출산 대응 국가실천전략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그 결과 응답자 1,043명 중 52%가 정부의 교육비 지원, 자녀양육비 세제감면등 지원확대를 가장 희망하였으며, 25%는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2006년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따른 재정지원은 고작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 38억원, 불임부부지원에 213억원이다. 이 항목도 2006년부터 신설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출생수당이나 양육수당 또는 아동수당은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표 7〉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대응 국가실천전략 설문조사 결과

설 문 내 용	응답율(총 응답자수 1043명)	비고
1. 출산축하금 지급, 아파트 우선분양 등 주거지원 강화	9%	
2. 교육비 지원, 자녀양육비 세제감면등 지원확대	52%	
3.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12%	
4.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	25%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직접적 현금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이나 아동수당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정책대상이나 지원수준은 매우 다르다. 그러나 일시적 지원금의 규모가 실제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에는 역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금지원에 대해 고려할 때 유의할 점은 실제 자녀양육비와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의 단일 지원을 통하여 출산율에 직접적 영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박세경 2006).

정부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에 착수하여, 2006년부터 5년간 총 19조원을 투자하는 저출산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을 곧 바로 확대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조세정책을 통하여 사회복지지출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 ·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한 직접적인 복지혜택의 실현은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며, 또한 현재의 직접적인 복지지출은 한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이루어짐으로써 다수의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세정책의 하나로 출산과 노인에게 절대적인 필수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의 경우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기⁴⁾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을 개선하는 방안이 충분히 고려

4) ① 우리나라의 직접세 · 간접세 비율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국 세	직 접 세	40.5	43.9	40.7	40.0	43.7
	간 접 세	59.5	56.1	59.3	60.0	56.3
조 세	직 접 세	49.5	51.2	50.4	50.6	53.1
	간 접 세	50.5	48.8	49.6	49.4	46.9

출처 : 2004년 국세통계연보

② 외국의 직접세 · 간접세 비율(국세 기준, 2000년기준)

구 분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프 랑 스	이 태 리
직 접 세	58.4	93.3	57.1	47.4	43.3	52.1
간 접 세	41.6	6.7	42.9	52.6	56.7	47.9

출처 : 2004년 국세통계연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수평적으로 우리나라의 면세제도와 OECD 국가들의 제도, 특히 영국의 영세율 및 기타 제도, 프랑스의 의약품에 대한 저율과세, 기타 OECD 국가들의 경감세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면세범위는 그다지 넓은 것은 아니고 소득분배의 역진성에 대한 배려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에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된다(윤태화 외 2006, 264).

III.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면세대상의 개선

1. 부가가치세의 면세 근거

부가가치세 체제에 대한 OECD 국가들의 특징은 과세와 면세를 적용하는 업종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OECD에서 정한 표준면세 범위를 기본으로 삼고 있으나, 각국의 면세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공통분모는 찾기 어렵다. 이는 이들 국가들의 다양한 여건에 의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면세범위는 OECD 표준범위에 비해 넓은 편이다. 그러나 이것이 꼭 좋다거나 혹은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여건에 의해 과세와 면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부부분에 있어 지나치게 면세적용 범위가 넓은 분야가 있으며, 기준이 모호하여 유사한 재화 혹은 용역에 대해 과세와 면세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정재호 2002, 17).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므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세부담의 역진성완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경제·사회 정책적 고려에 의해 예외적으로 면세를 허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세의 부과 징수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할 때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유찬은 특정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정당화되는 이유 즉, 부가가치세에 면세제도가 도입되는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를 들고 있다(김유찬 1995, 30-32).

- ① 소득분배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
- ② 사회적 관점에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것
- ③ 사회적 관점에서 공급을 장려하기 위한 것
- ④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에 부적합한 것(노동·자본·토지 등 생산요소)
- ⑤ 부가치세의 산정이 어려운 것
- ⑥ 다른 곳에서 과세(특히 특별소비세)
- ⑦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

본 논문은 조세정책의 하나로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면세제도 도입근거로서 복리후생의 지원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자 한다.

2. OECD 국가의 면세범위

OECD에서는 회원국들이 준용하도록 표준적인 면세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표준면세범위를 우리나라의 면세범위와 비교하면 다음 <표 8>과 같다(윤태화 외 2006, 258-259).

<표 8> 우리나라 면세범위와 OECD 표준면세범위 비교

구 분	면 세 대 상
OECD 표준면세 (standard exemption)	우편서비스,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교육, 문화사업, 자선사업, 부동산 임대, 복권, 토지와 건물의 공급, 비영리단체의 비상업적인 활동, 자선사업 등
OECD 표준면세를 우리나라에서 과세	도박, 상업용 건물의 임대와 공급, 상업적 문화사업
OECD 표준면세 이외의 우리나라의 면세부문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여객운송용역, 공중전화, 담배(200원 미만), 국내제작이 곤란한 스포츠 경기관련 수입품 및 철도용 물품, 면세제, 공장·광산·건설사업장 및 학교의 급식, 농·어업용 유류, 농·어업의 경영 및 작업대행용역, 미식용농·임·축·수산물,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가가치세체계를 지니고 있는 유럽국가 대부분의 경우, OECD 표준면세범위를 준용하고 있으며 개별 나라들은 이 OECD 표준범위에 추가하여 면세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9>과 같다(윤태화 외 2006, 258-259).

<표 9> 표준면세범위에 대한 개별 국가별 차별화

국 명	표준면세범위 이외의 면세	표준면세범위에 대한 과세
오스트리아		임대(개인주택)
벨기에	법률서비스	—
캐나다	육아, 극빈자를 위한 법률구조, 도선영업, 도로·다리의 통행료, 표준정부서비스	복권, 도박, 상업용지와 건물의 공급·리스, 국내우편서비스
덴마크	여객수송, 장의업, 예술작품, 여행 안내업	극장·영화관
핀란드	공연업, 문학과 예술작업에 대한 판권, 장남에 의한 상거래, 공동묘지업	우편서비스, 문화서비스, 상업용지와 건물의 리스(선택적)
프랑스	비영리기관의 기념관, 묘지 등의 건축 및 유지보수작업, 선물거래, 친환경재생물질 등	부동산 임대, 환자수송서비스

국 명	표준면세범위 이외의 면세	표준면세범위에 대한 과세
독일	—	—
그리스	법률서비스, 저작권, 예술활동, 공공방송 및 TV, 공공의 상수공급	문화상품
아이슬란드	스포츠, 여객수송, 작가, 작곡가, 장의업, 여행알선업	—
아이랜드	여객수송, 방송, 공공수도업, 스포츠 경기 입장료, 아동복지업, 장의업과 여행안내업	상업용 부동산의 장기임대, 토지와 건물의 공급
이태리	지역여객수송, 장의업	상업용 토지와 건물의 공급과 임대(표준세율)
일본	사회복지사업, 장애인용품의 공급, 공공서비스, 파생상품	의료업, 교육서비스, 보험 및 재보험, 금융서비스, 부동산 공급
룩셈부르크	—	—
멕시코	잡지, 금화 및 은화, 지분, 국제 화폐거래, 금, 저작권, 여객운송업, 농임어업	우편서비스와 보험, 부동산 임대, 금융서비스
네덜란드	화장·장의업, 공공방송, 스포츠작곡가, 작가, 언론인의 서비스	문화서비스, 상업용 부동산 임대, 부동산공급, 스포츠 숙박시설의 이용
뉴질랜드	—	우편서비스, 혈액, 인간의 장기, 의료서비스, 환자수송업, 자선활동, 비영리단체의 비상업적 활동, 문화서비스, 스포츠, 보험과 재보험, 부동산 임대(주거시설 제외), 복권과 도박, 토지와 건물의 공급(5년 이상 동안 주거시설로 사용해진 토지와 건물 제외)
노르웨이	여객수송, 장의업, 호텔	우편서비스
포르투갈	농업	—
스페인	문학과 예술작업에 대한 판권	소비자가 대금을 치르는 일부 문화서비스
스웨덴	공공 TV와 라디오, 저작권, 공동묘지업, 사회사업	우편서비스, 문화서비스, 특정 상업용건물의 임대
스위스	아동 및 청소년복지업, 사회사업, 사회안전서비스, 일정조건하에 대리 근로자의 공급, 중고품	주차, 특정임대업, 특정 은행서비스, 치과기공업
터키	해상인도와 보수작업, 사업용 항공업 또는 철도수송업, 사회복지사업, 농업용수	교육과 문화서비스, 신문, 책, 잡지(경감세율), 우편업, 상업용 건물의 매각, 임대, 라디오와 TV방송, 병원, 복권과 도박
영국	화장·장의업, 스포츠 경기, 특정고급호텔 서비스	새 상업용 빌딩의 공급은 완료일로부터 3년 동안 표준세율로 과세. 허가된 클럽의 도박기계와 도박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가가치세의 소득에 대한 역진적 성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의 <표 9>에서 보여준 면세제도 이외에도 경감세율 및 영세율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공급하는 항목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음식을 비롯한 국민생활의 기초적인 재화 · 용역과 자선 · 구호 금품 등 사회복지차원의 재화 ·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아동용 보호장구 · 의류 · 신발 · 모자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육아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영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이 17.5%로 높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감세율의 대상을 살펴보면 가사비용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줄여 소득분배의 역진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부가가치세로 5%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소비세법 제6조에는 자산의 양도 등 다음과 같은 동법 [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소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일본 소비세의 비과세 특징은 국민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각종 요양과 방문간호요양, 그리고 노인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 및 입원식사요양비, 특정요양비 또는 의료비의 지급과 관계된 요양, 노인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에 관계된 지정노인방문간호 등 용역의 제공과 이와 관련된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 하고 있다.

3. 저출산에 따른 면세대상 개선방안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전체가구의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132만원으로 1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234만원의 56.6%를 차지하였다. 이를 자녀 한명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자녀 1인당 양육비 75만원 소요되었으며, 이 중 교육비가 27만원으로 전체 양육비의 36%를 차지하였다(김승권 2003. 12, 6).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2003년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20~30대 여성 10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5명 중 4명(83%)이 우리나라의 출산 및 육아 지원정책에 대해 ‘불만’이라고 답했다. 육아비와 관련해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육아지원금의 확대’가 가장 많았고, ‘출산 장려금의 확대’ ‘출산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으로 이어졌다.

육아를 위한 “필수 양육비”는 월 35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등 보내면 최소 25만원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갓난아기는 한 달에 4통 정도의 분유를 먹어 10만원, 기저귀는 한 달에 60~70개들이 3~4팩 정도 사용하여 6~10만원, 매달 예방접종 주사 비용으로 2~3만원, 그리고 옷과 장난감 등 잡비로 10만원정도 들어 가장 기초적인 비용만 계산해도 한 달 육아비가 35만원을 넘는다. 여기에 아기 침대와 유모차 등 아이 용품 값은 제외된 것이다⁵⁾.

이러한 현실에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산 및 육아용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분유 · 기저귀 및 어린이 의류 등 다음과 같은 출산 및 육아용품을 면세를 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여야 한다.

5) [아이 안 낳는 사회②] ‘필수 양육비’ 월 35만원 한국갤럽 (August, 11, 2003), <http://www.gallup.co.kr/>

- ① 출산용품 : 유아침대, 침구류
- ② 유아용 식료품 : 이유용식품(분유, 이유식 포함)
- ③ 어린이 안전용품 : 카시트, 미아방지용품
- ④ 신생아·육아·어린이 의류(신발, 모자, 양말 포함)
- ⑤ 위생용품 : 기저귀
- ⑥ 이동수단 : 유모차, 보행기

영국의 경우에는 아동용 보호장구·의류·신발·모자 등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아동용카시트에 대해서는 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계의 육아비용을 줄이도록 하였다.

2003년 7월 31일 국회에서는 여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성의 기초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용 위생용품과 유아용 위생용품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여성용 위생품은 면세되었지만 유아용 위생품은 제외되었다. 그 후에도 몇몇 국회의원들이 저출산율로 인한 노령화사회의 심화와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여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역시 폐기되었으며, 2005년 2월에는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 및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였지만 폐기되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당해 재조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금액만 세금이 면제되는 부분면세제도로 실제로는 가격의 약 3%정도의 인하효과가 있지만, 영세율의 경우 완전면세제도로 가격의 10%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수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될 수 있다.

4. 고령화에 따른 면세대상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을 보살피는 것만도 벅찬 것이 현실이며, 중산층 등 일반 노인은 어차피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수용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다양한 유료노인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등의 활성화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에 대한 在家서비스는 공공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며, 영리성보다는 복지차원의 공익성이 우선되는 분야이므로 관련된 용역 등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인층에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필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실버사업이나 유로양로원 사업에 대하여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또는 면세를 함으로써 저렴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필수적인 노인용품에 대해 면세를 적용함으로써 노인들의 생계비용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재화와 용역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은 세 분야에서 살펴볼 수 있다.

- ① 요양복지시설 건축 및 동 시설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한 면세
- ② 有料在家복지서비스 : 가정도우미파견사업,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노인에 대한 在家 서비스에 대한 면세
- ③ 실버용품에 대한 면세 : 치매 환자복, 노인용 변기, 휠체어, 환자용 음식, 보행보조차, 실버카, 전동휠체어, 성인용기저귀, 요실금제품 등에 대한 면세

일본 정부는 1993년 「일본형 복지사회구상」을 제시 하였는데 그 특징은 서구형 복지구가가 큰 정부에 重稅型 복지국가이고 과대한 복지와 重稅 때문에 국민경제에의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다양한 복지국가니드(need)의 변화에 부응하여 公과 私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 기업의 상호부조와 일본적 가정기반에 의한 자조복지에 의거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에 의한 복지사회의 구축을 의도한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정 · 지역사회 · 복지시설의 유기적인 결합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료노인홈 등은 시장기구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복지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영리적 기업참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문현상 1996, 101)

일본의 경우 노인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 및 입원시 식사요양비, 특정요양비 또는 의료비 등 노인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에 관계된 지정노인방문간호, 介護保險法에 의한 居宅서비스(방문介護, 방문입욕介護), 시설서비스등 용역과 이에 관계된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비과세를 하고 있다.

2003년 3월 국회에서는 장애인 · 아동 ·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건축용역에 대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활발한 참여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여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제안하였지만 폐기되었다.

IV. 결 론

저출산 · 고령화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대책에 착수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간 총 19조원을 투자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3분의 1이하로 매우 열악한 상태로 나타나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30위에 있지만, 근로자 1인당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의 38.6%인 것을 감안하면 사회지출의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200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의하면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은 산모 · 신생아도우미지원에 38억원, 불임부부지원에 213억원 정도이며,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에 2,126억원, 노후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마련에 대한 예산은 519억원, 노인그룹홈설치를 신설하여 155억원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고령화·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복지후생의 실현은 재원의 확보차원에서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에서 고령화·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대안으로 필수적인 실비용품과 유아용품등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노인생활과 출산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아동용 보호장구·의류·신발·모자 등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아동용카시트에 대해서는 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계의 육아비용을 줄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노인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에 관계된 지정노인방문간호, 居宅서비스, 시설서비스등 용역과 이에 관계된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비과세를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인과 출산·양육에 필수적인 실비용품과 유아용품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문제는 세수 등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현재의 부족한 재정에 의한 직접적인 복지지출은 한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수의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면 복리후생 지원과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실비용품과 출산 및 육아용품은 면세하는 세제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경우 당해 재조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금액만 세금이 면제되는 부분면세제도로 실제로는 가격의 약 3%정도의 인하효과가 있지만, 영세율의 경우 완전면세제도로 가격의 10%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수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高敬煥. 2004. 張英植, 勝又幸子. 「韓.日社會福祉支出推計(2001年)」. 韓國保健社會研究. 정책보고서-48.
- 고경환 · 장영식 · 이내연. 2003.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1990~200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정책보고서-36
- 권중원. 1999. “조세공정 측면에서 본 부가가치세제의 개편방안”. 계간 세무사. 여름호. 한국세무사회.
- 김승권. 2003.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찬. 1995.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설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나병균. 2000. “장년제도와 사회보장:1980년 이후 OECD 회원국가들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변화”. 한국사
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 문현상 · 정우진 · 김유경 · 김동배. 1996. 「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세경. 2006. “저출산 시대의 자녀양육비 부담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형수. 2005.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재정포럼 2. 한국조세연구원.
- 백종화 · 최병호 · 김수봉 · 김태완. 2003. 「사회보장발전의 중장기 전망과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명옥. 2004.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2004년 국정감사 10.
- 유시권. 1996. 「부가가치세제도와 행정의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윤태화 · 서희열 · 김유찬. 2006. “소비세 분야의 세제 개편방안”. 2006년 조세개혁 심포지엄 및 춘계학술
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세무학회.
- 정경희 · 김미혜 · 정순돌 · 이윤경. 2002.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재호. 2002.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재정포럼 9. 한국조세연구원.
- 최 광 · 이우택. 1988. 「부가가치세의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연구보고 제4집. 한국조세연구원.
- OECD Factbook 2005 :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http://www.taxsites.com/international.html>
- <http://www.brw-tva.be/english/index.asp>
- <http://www.skatteetaten.no/>

A Study of the Improvement of VAT Exemption according to the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Ki-Soo Oh*

— <Abstract> —

On July 1, 1977, Korean government adopted the value add tax(V.A.T.) to simplify the complicated indirect tax structure, a combination of item, reporting procedure and tax rat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since 1997, the amendment of exemption regulations of VAT law has reduced principally the exemption scope for the sake of taxation equity, however, the amendment of exemption regulations of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enlarged the exemption scope mainly for the sake of the welfare.

Last year the birthrate in Korea already one of the lowest among the 30 member nation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ropped to its lowest level ever. One of the main reasons behind the declining trend was the fact that the average ages of Korea newlyweds were getting higher. That means more women faced higher chances of infertility. Another factor making couples avoid having children was the high cost of bringing up a child and a lack of childcare facilities.

Experts warn if the downward trend continues, Korea may face economic blows from a shortage of workers and lead to lower growth. The potential social costs of a rapidly-growing elderly population also poses concerns. Analysts are calling for new government measures to deal with the shrinking and aging population. In the present situation, the government must prepare to come up with its most comprehensive plan yet to tackle the country's falling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Therefore, we need to support the national welfare by exempting VAT of two areas of goods and services. One is the exemption of the goods and services for the aged and the other is that of the goods and services for maternity and child care.

<Key words> VAT(value added tax), exemption tax, welfare.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Tax & Accounting Information, Kimpo College